

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동장에게 권한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는 매화장신고 관련 업무를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운영 실시로 복지사무소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구청장이 동장에게 권한위임한 “매화장신고 및 신고증교부”업무를 삭제함(안 제2조)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자치법 제95조

나. 부산광역시사하구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

4. 검토의견

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무소 개소에 대비하여 복지사업소에서 담당할 업무를 분장하던중 “매화장신고 및 신고증교부”업무를 동장관할에서 복지사업소 업무로 분류하게 됨에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.